

충청북도새마을공장등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1. 12. 30

내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1일
 -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 다. 상정일자 : 제74회 정기회
 - 제6차 내무위원회(1991. 12. 27)상정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재국장 유 의 재)

가. 제안이유

- '84년부터는 새마을공장의 지정이 없으므로 감면조례의 실효성 상실
- 농공지구에 관한 법규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로 대체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부업단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생산품 특산단지로 개편 되었음
- 공업배치법이 공업배치및공장건립에관한법률로 개편 되었음.

나. 주요골자

- 조례명칭과 감면목적 규정을 전면개편
 - 농의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조례로 개칭
- 새마을공장과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대상에서 제외
 - 이미 지정받은 것은 구 조례 적용조치
- 농공지구는 농공단지로, 부업단지는 농어촌생산품 특산단지로 명칭변경
- 공업배치법시행령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민귀식)

- 새마을공장은 상공부고시로 마련한 농촌공업 육성에 관한 규정(73. 3. 20제정)에 의하여 지정, 육성해 왔으나 1982. 2. 5 최종 개정규정에 의하여 '84년부터는 새마을공장을 지정하지 않아 감면조례의 실효성상실로 새마을공장에 대한 면제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며
- 농공지구에 관한 법규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흡수되고 대신 사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로 대체되었고.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부업단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생산물 특산단지로 개편
- 공업배치법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로 개편되었으며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규정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등으로 통합되었으나 지정하는 규정이없으므로 폐지하는등 각종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명칭변경과 관계법령과의 내용일치를 위한 개정이므로 충청북도농의소득원개발사업지원율위한다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없음

5. 토 론 요 지 : 해당사항없음

6. 심 사 결 과 : 도 원안대로 의결(참석7인, 찬성7인)

7. 소수의견요지 : 해당사항없음

8.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새마을공장등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